#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9131

발의연월일: 2021. 3. 25.

발 의 자:김상훈·하태경·정진석

한무경 • 박수영 • 조수진

김형동ㆍ이 영ㆍ박대출

윤재옥 의원(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부동산임대사업을 하는 자가 상가건물에 대한 임대료를 임차인으로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인하하여 지급받는 경우 임대료 인하액의 100분의 70(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해당 과세연도의 기준소득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특례를 두고 있음.

그런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의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경제 침체 및 소상공인들의 매출 감소로 국가적 차 원에서의 정책적 지원이 지속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2021년 12월 31일로 일몰될 예정인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조세특례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고자 함(안 제96조의3).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6조의3제1항 중 "2021년 12월 31일"을 "2024년 12월 31일"로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 례) 제96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과세표준신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혂 행 개 정 아 제96조의3(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제96조의3(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 산임대사업을 하는 자가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상가건물에 대한 임대료를 임차인(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소상공인에 한 정한다)으로부터 2020년 1월 1 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2024년 12월 31일-(이하 이 조에서 "공제기간"이 라 한다) 인하하여 지급받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 대료 인하액의 100분의 70(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해당 과세연도의 기준 소득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에 해당 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 세에서 공제한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